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재논의

- 순경시험제도를 중심으로 -

The Re-Discussion for the Present Employment System of Police Officers

- On the System of the Examination of Police Officers -

곽영길*

차례

- | | |
|-----------------|----------------|
| I. 서론 |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
| II. 연구의 이론적 기초 | V. 결론 |
| III. 설문조사의 분석논의 | |

국문 요약

경찰청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경찰관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2년 12월 28일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채시험의 필기과목에 고교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도입되어 개편,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개편목적이 본래 의도한 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경찰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일선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능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현행 시험과목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현행 순경채용시험의 과목구성은 한 국사, 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양과목만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도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형사법 등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2016년 9월 2일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개편 첫 해의 비법과목 선택 합격생 비율은 6% 대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6년에는 1.5%로 하락하였다. 이는 법 과목을 접하지 못하였던 고졸자들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제도개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결과적으로 현행 순경시험과목제도는 본래의 취지상 효용성이 미미하므로 과목개편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과목구성의 적절성 및 시험효용의 타당성 확보 위하여 응시

과목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합격 후 임용 전 신입경찰관 교육기관에서의 충분한 교육기간과 별도의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임용 후 경찰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어 : 채용제도,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과목, 경찰시험

I. 서론

지난 2012. 12. 28.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순경 공채시험의 필기과목이 개편,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개편의 핵심내용은 이전의 5개 필수과목제(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를 2개 필수과목(한국사, 영어)과 3개의 선택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필기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추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

최근 본 연구자는 개편된 시험과목제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이를 한국자치행정학회보에 발표²⁾한 바 있는데, 이는 개편된 시험과목제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이었으며 개편된 시험과목제도에 따라 비법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하여 합격자들의 실제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경공채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편된

1) <http://www.law.go.kr>(2016. 8. 2 검색)

2) 박영길·김윤영,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보 제30권 제3호, 2016, 275-290쪽.

시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개편의 목적이 의도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이후 순경공채시험에서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수험생의 비중 및 고졸자들의 순경공채시험 합격률의 증가 여부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또한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 후 일선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능력에 관하여 선임경찰관들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개편된 현행 시험과목제도의 적절성 여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방법으로는 경찰청의 공개자료 및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언론기사 등을 통한 문헌분석과 현직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기관인 경찰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II. 연구의 이론적 기초

1. 시험의 의의

1) 시험의 목적

시험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도구이다. 시험의 목적은 수험생의 일반적 능력이나 특수한 능력 또는 적성, 업적, 건강과 체력, 성격 및 정서 등의 능력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³⁾

3) Stahl, O. Glen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7th and 8th ed.), New York: Harper & Row, 1976, p.140-145;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4, 284쪽 재인용.

2) 효용성 요건

시험이 효용성을 갖기 위한 기준으로는 타당성, 신뢰성, 난이도, 객관성, 실용성 등을 들 수 있다.⁴⁾

시험의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당장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아울러 장래의 발전가능성도 예측해 줄 수 있는 시험이 효용성이 높은 시험이며, 타당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⁵⁾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간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검증할 수 있는데, 시험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의 근무성적과 채용 당시 그들의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⁶⁾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도구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또는 일치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험을 시간을 달리해 치렀을 때, 그 성적의 차이가 적을수록 그 시험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⁷⁾

난이도(Difficulty)는 시험이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수험생의 능력의 차이를 제대로 식별해 주지 못하므로 시험은 각 응시자의 능력 차이를 식별해 줄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어려워야 한다. 수험생들의 성적분포가 종 모양(bell-shaped)의 정규 분포를 나

4) 강성철 외, 앞의 책, 284-287쪽.

5) 위의 책, 285쪽.

6) Tyler, 1963: 28-32; F. A. Nigro and L. G. Nigro, 1998: 87-110; Cricker and Algina, 1986: 217-266; DeCenzo and Robbins, 1999: 176-181; 이영남, "바람직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2007: 231쪽 재인용; 오규철,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1호(통권 4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106쪽.

7) 강성철 외, 앞의 책, 286쪽.

타내는 것이 좋다.⁸⁾

객관성(Objectivity)은 시험결과가 채점자의 주관적 편견이나 시험 외적 요인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의 객관성이 미흡하면 시험절차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효용성의 다른 요건들을 논의할 여지가 없어진다.⁹⁾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기준을 표준화하고, 복수의 채점자가 채점토록 해야 할 것이다.¹⁰⁾

또한 시험이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용성(practicability)을 지녀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험의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며, 시험 관리의 측면에서 시험의 실시 및 채점이 용이해야 한다.¹¹⁾

2. 현행 순경채용시험제도

경찰공무원 채용에 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신규채용의 의의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하고, 움직여 쓰는 활동으로서의 임용에는 정부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신규채용, 즉 외부임용과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임용이 있다.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개경쟁채용과정에 포함되는 활동에는 모집, 시험,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추천요

8) 위의 책, 287쪽.

9)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3, 184쪽.

10) 강성철 외, 앞의 책, 287쪽.

11) 위의 책, 287쪽.

구와 추천, 시보임용, 임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활동은 조직의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조직의 통합에 기여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선택 기능을 보조한다.¹²⁾

경찰의 신규채용은 경찰공무원 임용의 첫 번째 단계로서 특정인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며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¹³⁾

2) 신규채용의 방법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special appointment examination)¹⁴⁾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공직에의 임용 기준을 개인의 실적, 즉 업적, 능력, 자격에 두는 실적주의 제도 아래서는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다.¹⁵⁾

(1)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항은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한다.”고 공개채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개경쟁시험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제도로, 순경공채시험의 응시 자격에서 학력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자로 제한되지만, 경력 등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공개경쟁시험은 공직지원자에게 기회 균등성

12) 위계점, 공공행정의 이해, 고시연구소, 2004, 706쪽.

13)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8, 67쪽.

14) 기존의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8년 외교부 등의 특별채용 비리가 큰 사회적 물의를 빚자 정부는 2010년의 법 개정을 통해 ‘경력경쟁채용’이라는 용어로 바꾼 것이다(강성철 외, 앞의 책, 270쪽).

15) 강성철 외, 앞의 책, 270-271쪽.

을 통해 민주성 확보와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인력수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¹⁶⁾

다음 각 호¹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 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017&cid=42155>(2016. 10. 29 검색)

17)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http://www.law.go.kr>(2016. 10. 29. 검색)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제1호)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3호)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4호)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5호)
6.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6호)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7호)
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8호)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하며,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표 1>에서와 같은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¹⁸⁾ 일반적인 채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나, 성격과 자질에 관한 선발시험은 주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표 1> 시험의 구분 등

구분	내용
제1차 시험	신체검사
제2차 시험	체력검사
제3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4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4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차 시험	종합적성검사
제6차 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시험의 방법과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에 있어서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¹⁹⁾

1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과 제2항.

19)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항.

〈표 2〉 시험의 방법과 내용

시험의 방법	내 용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3)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예정 계급 별로 요건을 달리하여 순경에서 경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총 7,764명의 경찰관을 신규 임용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른 여성경찰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1.3%인 1,653명을 여경으로 임용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사이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을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공개채용은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일반순경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은 특수한 기술보유자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대해 특정부서 근무를 조건으로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2014년에는 경찰대학 120명, 경찰간부후보생 50명, 일반순경 5,614명 등 총 5,784명을 공개채용하였으며, 경찰행정학과 560명 등 총 1,396

명을 경력경쟁에 의해 채용하였다.²⁰⁾

〈표 3〉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현황('14)

구분	계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7,153명	20명	170명	-	20명	6,943명
공개채용	5,784명	-	170명	-	-	5,614명
경력경쟁채용 (구, 특별채용)	1,396명	20명	17명	-	30명	1,329명

출처 : 경찰청, 2015 경찰백서, 357-358쪽.

2014년 이후 비법과목 선택 합격생 비율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4년 1차(6.3%), 2차(6.5%), 2015년 1차(4.1%), 2차(2.5%), 3차(2.5%), 2016년 1차(1.5%)이고, 2016년 비법과목 선택 합격생 비율은 2014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4년 이후 비법과목 선택 합격생 비율

구분	2014년 1차	2014년 2차	2015년 1차	2015년 2차	2015년 3차	2016년 1차
비율	6.3%	6.5%	4.1%	2.5%	2.5%	1.5%

출처 : 2016년 9월2일 경찰청 정보공개자료.

4) 경찰채용과목의 시기별 변화 실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일반 순경 공채시험과목의 변천사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9년부터 1981년 7월 이전까지

20) 경찰청, 2015 경찰백서, 2015, 357-358쪽.

순경채용 시험과목은 교양과목과 법과목 등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었으나, 1981년 7월부터 1998년까지는 모두 교양과목으로만 구성되었었다. 다시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교양과목과 법과목 등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항으로는 1976. 6. 11.~1981. 7. 18. 사이에는 시험과목으로 논문이 채택되어 있었으며, 2014. 2. 12. 이전까지는 모두 필수과목으로만 구성되었는데 비해 그 이후부터 선택과목제가 도입된 점이다.

한편, 순경 채용시험에는 전·의경 출신자와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도 실시되고 있는데, 전·의경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과목은 일반 순경과 동일하고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경우는 5개 과목(한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경위이상 및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경사 및 경장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순경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²¹⁾

순경의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매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²²⁾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²³⁾

2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2조.

2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2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표 5〉 일반 순경 공채시험과목의 변천

연 도	시 험 과 목
1969 ~	국어, 국사, 일반상식, 법제대의, 경찰법규, 경제대의
1970. 4. 4. ~	일반상식, 법제대의(⇒ 법과 제도에 대한 대략적 내용)
1972. 10. 30. ~	국사, 일반상식, 법제대의
1976. 6. 11. ~	국사, 법제대의, 논문
1981. 7. 18. ~	국어(한문포함), 국사, 정치경제 및 국민윤리
1987. 12. 31. ~	국어 I·II(한문포함), 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 I·II
1991. 12. 30. ~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계산일반, 국민윤리, 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
1994. 12. 31. ~	국어, 국사, 영어, 국민윤리, 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
1998. 12. 31. ~	국어,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2000. 5. 25. ~	경찰학개론, 수사 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2012. 2. 1.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수사 I은 수사기법 노출 등 보안성 문제가 있어 제외하고, 국가적 정체성과 경찰관으로서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감안 「한국사」 도입
2014. 2. 12. ~ 현재	필수 : 한국사, 영어 선택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 고졸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과목』 도입 ※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중 국어, 수학, 사회 및 과학의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41조 별표 2). 가. 국어 : 한문 포함 나.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다.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라. 과학 :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1조 별표 2.

3. 선행연구

곽영길·김윤영²⁴⁾의 경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개선 방안'으로 현재의 필기시험 과목 개편, 사례논술시험 도입, 윤리과목(인성)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박종승²⁵⁾의 경우,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

24) 곽영길·김윤영,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개선방안"-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2016, 275-290쪽.

안에 관한 연구'를 하여 제도 변경을 전제로 선택과목제의 폐지, 별도선발전형 도입과 현 시스템 내에서 학력의 제한, 시험난이도의 균형성 유지, 신체검사의 1차 시험화를 제시하였다.

석청호²⁶⁾의 경우, '경찰채용시험의 개선방안'의 방안으로 채용부문별 시험목표의 명확화, 필기시험과목의 조정, 시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출제방식과 시험방법의 개선, 채용과정에 부적격자 배제장치 강화 등을 연구하였다.

이영남²⁷⁾의 경우, '바람직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채용시험의 효용성증가 방안으로 면접강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관리 과정에 외부 출제·채점위원 참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내용 조정,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의 조정,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임창호²⁸⁾의 경우,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 관한 연구'의 개선방안으로 필기시험 개선방안-필기시험과목의 전문영역과 교양영역의 균형, 체력검사의 현실화, 면접시험의 실질성 확보, 신원조사의 실질화, 최종합격자 결정시 개선방안-최종합격자 결정시 영역별 반영비율의 변경, 신체검사와 체력검사의 동시실시, 적성검사에 있어서 심리검사·성격검사, 거짓말탐지기검사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25) 박종승,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2015, 269-299쪽.

26) 석청호, “경찰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0, 71-115쪽.

27) 이영남, “바람직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2007, 227-256쪽.

28) 임창호,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 관한 연구”, 2002, 4, 152-188쪽.

Ⅲ. 설문조사의 분석논의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법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 수거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4일간이었으며, 설문 대상인 경찰교육원의 직무교육생들에게 표준화된 설문지 100부를 배부하여 100부(회수율 100%)를 회수하여 모두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이 높은 것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수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설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총 11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과 직무수행능력 및 채용시험 관련 요소 등 6문항으로 되었으며,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수행능력 및 채용시험 관련 요소 등에 관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부터 순경공채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경찰학개론을 선택하지 않고도 경찰직에 입문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현 근무부서 내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선택하지 않고 경찰직에 입문한 동료나 부하직원이 있습니까?
3. 위의 2의 경우가 있다면, 법과목과 경찰학개론을 필수로 공부하고 경찰직에 입문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직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주로 어떠한 점이 그러한가요?
4. 경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법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경찰직에 입문 하더라도 이후 교육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5. 개편되어 시행 중인 순경공채시험과목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개편하는 것 중 어느 쪽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개편 쪽에 찬성하신다면 개편방향에 관해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기타 의견(설문문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90명(90.0%), 여성 10명(10.0%)이었으며, 연령은 40대가 39명(39.0%), 30대가 30명(30.0%), 50대 25명(25.5%), 20대 6명(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대졸(전문대졸 포함)이 81명(81.0%)으로 이 중에는 대학원졸업자도 10명(10.0%)이 있었으며, 고졸 17명(17.0%), 무응답 2명(2.0%) 순으로 나타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졸업자가 대부분이었다.

계급은 경사 이하가 48명(48%), 경위 이상이 52명(52%)이었고, 근무

연한은 20년 이상이 39명(39.0%),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5명(25.0)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64명(64%)이고 3년~10년 미만이 15명(15.0%)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7명(87%)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찰직에로의 입직경로에 있어서는 90명(90%)이 공개경쟁 채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 6

구분	내 용	명(%)
성 별	남	90(90.0)
	여	10(10.0)
연 령	20대	6(6.0)
	30대	30(30.0)
	40대	39(39.0)
	50대	25(25.0)
학 력	고졸	17(17.0)
	대졸(전문대졸 포함)	81(81.0)
	대학원졸	10(10.0)
계 급	무응답	2(2.0)
	경사 이하	48(48.0)
	경위 이상	52(52.0)
근무연한	3년 미만	21(21.0)
	3년 ~ 10년 미만	15(1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25(25.0)
	20년 이상	39(39.0)
근무기관	지방경찰청	5(5.0)
	경찰서	51(51.0)
	지구대·파출소	36(36.0)
	기타(경찰청교육기관 등)	6(6.0)
	무응답	2(2.0)
입직 경로	공개채용	90(90.0)
	특별채용	10(10.0)

4. 직무능력 및 채용시험과목 관련 인식의 분석

1) 순경공채시험과목 개편의 인지여부

2014년부터 순경공채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경찰학개론을 선택하지 않고도 경찰직에 입문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100명(남자 90명, 여자 10명) 중 74명(남자 67명, 여자 7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과목개편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014년부터 순경공채시험과목 개편 인지여부

구 분	합 계	예		아니오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남자	90명	67명	67%	23명	23%
여자	10명	7명	7%	3명	3%

2) 비전문과목을 선택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직원의 유무

현 근무부서 내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전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경찰직에 입문한 동료나 부하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중 49명(49%)이 있다는 응답을, 51명(51%)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개편된 시험과목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법과목 등의 전문 과목을 택하지 않고 합격한 숫자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또한 경찰관 사이에서 서로 합격할 때 어떤 과목을 응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비전문과목을 선택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동료·부하직원의 유무

구분	합계	예		아니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자	90명	42명	42%	48명	48%
여자	10명	7명	7%	3명	3%

3) 비전문과목을 선택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직원의 직무능력 차이 유무

현 근무부서 내에 비전문과목을 선택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직원이 있는 경우, 전문과목을 선택(또는 필수로)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직원과 비교하여 직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58명이 응답하였는바, 비전문과목을 선택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직원이 현 근무부서 내에 없지만 이전의 직무경험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이에 응답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58명 중 33명이 직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25명은 직무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바,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비전문과목을 선택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직원의 직무능력 차이 유무

구분	합계	있 다		없 다		무응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자	90명	29명	29%	20명	20%	41명	41%
여자	10명	4명	4%	5명	5%	1명	1%

비전문과목을 선택하여 경찰직에 입문한 직원의 직무능력에 차이가 있다면 주로 어떠한 점이 그러한지에 대한 질문에의 응답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여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법 이해력이 떨어진다.”, “직무와 연관된 법을 모르고 들어와 실무에 응용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법령 적용 시 항상 질문을 하고 자신감 결여”, “업무처리 능력 부족”, “민원인 등과 상담 시 원활한 소통이 안 됨”, “법적 지식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편이다.” “과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여부 등 (조각사유 등) 이해력 면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듯함”, “기본개념이 없다.” 등의 응답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직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다.

“경찰에 대한 소중함이 떨어짐”이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순경공채시험이 선택과목제가 된 이후 시험과목이 동일하므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경찰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달리 “처리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 그다지 직무능력상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4) 현행 선택과목제도에 대한 인식

경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법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경찰직에 입문하더라도 이후 교육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시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100명 중 67명(67%)이 비판적 의견을, 33명(33%)이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어 비판적 의견이 2배 더 많았다.

〈표 10〉 현행 선택과목제도에 대한 인식

구 분	합 계	비판적 시각		긍정적 시각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남 자	90명	58명	58%	32명	32%
여 자	10명	9명	9%	1명	1%

현행 선택과목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인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직무 특성상 법 과목은 필수로 하여야 하며, 경찰직 입문 후 법 과목을 교육으로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을 공부하고도 막상 실무에 나오면 응용이 어렵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학문인데도 선택으로 빼버린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느낀다.”, “입직하여 교육으로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당장 현장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법 과목 지식 없이는 힘들다.”, “경찰직이므로 기본적인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의 지식은 필요하고 입직 후에 교육으로 다지기엔 부족하다.”, “법을 집행하는 직업임에도 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찰 업무특성상 반드시 형법, 형사소송법은 알고 들어와야 한다. 입문 후 교육과정에서 알기는 힘들다. 채용시험을 공부하면서 형사절차 등에 대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고 와야 현장에서 형사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최소화된다.”, “법 과목을 추후 습득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적응력 및 민원인 응대(업무) 능률 향상 기간 지연을 초래한

다.”, “어느 정도 알아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인보다 법을 모를 수 있다.”, “경찰업무특성상 여러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률이므로 기본적으로 법 과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직 업무 특성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지식이 부족하다면 인권침해나 다른 권익의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택과목으로 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경찰에 입문하여도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경찰에 입문 시 경찰업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 법 과목을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습득은 어려움이 많음”, “형사법을 다루는 경찰은 국민들에게 형법과 형소법을 기본으로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에 필요한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어 임용 전 기초지식 습득이 어렵고 임용 후에도 습득하기 쉽지 않음”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법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로 법 과목을 습득 후 오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법과목이 준비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굳이 준비 안 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교육인력, 예산낭비임. 준비된 직원의 보수교육 위주 교육이 효과적 경제적임”, “입문시험은 법 과목으로 하고, 입문해서는 실무와 경험을 중심으로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생각이 든다. 입문하고 추가로 법 교육 교육과정에 투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등 비효율적인 것 같다.”, “경찰 고유 업무인 형법, 형소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편이 입직 후 적응하는데 훨씬 수월하며 승진시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됨”, “입직 시 많은 비용문제”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셋째, 법 과목 아닌 과목으로 입문한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되고 싶었던 직원보다는 일반직 준비하다 우연히 입직한 직원이 더 많다.”, “경찰을 준비하는 마음(경찰이 정말 되고 싶은 인력)으로만 법 과목 준비를 해서 경찰직에 입문하기 바람”, “사명감이 없고, 일반 9급 공무원 준비하다 낙방한 사람들이 단순히 돈벌이나 준비하는 시험의 모의고사라 생각”, “법 과목 미시험(특채)자의 경우, 조직용화 사명감 결여 등의 문제점 발생가능성이 있음”, “9급 시험응시 시 떨어져서 경찰에 입문하는 건 잘못,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조정점수 제도에 따라 경찰을 꿈꾸던 장수생들이 영어점수가 부족해 합격을 못하고 공무원을 원해 경찰시험에 유입된 인원이 경찰에 합격함. 기존 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 5과목을 유지해야 함”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한편, 현행 선택과목제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보인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시험에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더라도 입직 후 충분히 습득 가능하다.

“입문해서 배워도 충분. 입문하여 시험이나, 실무, 교육 등으로 가능”, “법 과목으로 시험을 봤어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한다. 어차피 계속 공부해야 함(별 차이 없음)”, “나도 국사, 국어 과목을 선택해서 입사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 “선배들의 조언 등 자기 맘에 달려 있다.”, “젊은 신입직원들 스스로 자아발전을 위하여 법 과목 공부하고 있다.”, “교육기간이 넉넉하고 과목도 많다.”, “중앙경찰학교, 실습기간을 통해 실무에 적용해야 할 법 과목을 습득할 수 있다 생각, 법 과목 이론이나 실무에 불필요한 내용보다 필요하고 일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을 교육한다

면 개선될 것임”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둘째, 시험과목으로서의 법 과목과 실무상의 차이가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일선 상황 및 경험이 법 과목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음”, “실제 근무하면서 법적용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론과 실무에 다소 차이가 있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암기식 보다는 교육 중 여러 사례를 들어보며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 “법 과목 선택 시 서열(등수)에 도움 될 뿐 현실적 적응이 되지 않고 있음”, “실무에 필요한 지식만 습득하면 단순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셋째,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력을 뽑을 수 있다.

“법을 오래 공부한 사람은 자만에 빠지거나 생각이 단조로워지고 법에 맞추어 끼우려는 성향이 강하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다 외부의 운으로 보는 시각을 곁들여 선발한다면 보다 다양한 시각의 눈을 가진 인력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음”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5) 현행 선택과목제도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인식

개편·시행 중인 순경공채시험과목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래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100명 중 24명(24%)이 현행 제도의 유지를, 66명(66%)이 개편 의견을 나타내었다. 특이한 것은 현행 선택과목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 시각을 나타내었던 응답자들은 100명 중 33명(33%)이었는데 현행 제도의 유지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24명(24%)에 불과한데 이는 유지를 지지하는 응답자 중의 일부는 무응답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현행 순경공채시험과목제도의 유지 여부

구분	합계	현 제도유지		개편		무응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자	90명	23명	23%	59명	59%	8명	8%
여자	10명	1명	1%	7명	7%	2명	2%

현행 순경공채시험과목제도의 유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된 시험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기존 시행되던 시험 혼란, 정착되고 있음”, “과목변경 수험생 혼란”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둘째, 청년취업 및 고졸자의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며, 다양한 입직 경로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는 어찌할 수 밖에 없는 체계이다.”, “고졸 등 개방 후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도록”, “다양한 입직경로”,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중앙경찰학교에서 법 과목에 대한 졸업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보완”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셋째, 법 과목은 입직 후 충분히 습득 가능하다.

“어차피 법 과목은 실무에서 배움”,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통해 충분히 법 지식 습득 가능”, “합격 이후 현장실무를 하면서 법 과목에 대해 공부를 해도 늦지 않음”, “다양한 선택과 교육과정이 중요”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한편 현행 순경공채시험과목제도의 개편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직의 특성을 고려한 시험과목이 필요하다.

“경찰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함”, “경찰의 특수성과 맞는 과목편성이 필요(수학, 과학이 왜?)”, “개편 전으로 돌려야 한다. 현 시험제도는 경찰직의 특성을 무시한 제도임”, “형사법은 경찰업무 활동에 기본이기 때문에”, “법 과목 및 경찰업무과목 필수로 적용”,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과목 선택”, “형사법과 경찰학개론 등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과 전문화된 차별화가 있어야 함”, “경찰은 고유 업무특성상 예전처럼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경찰이 더욱더 전문적으로 발전”,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함”, “법 과목으로 전문성 확보”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둘째, 경찰직에 입직 후 법 과목을 교육받는 것은 늦다.

“특히 형소법은 필수로 해야 함, 지구대 근무 시 절차 준수 등 위법행위 시비 근절을 위해”, “기본적인 법률에 대하여 낯설지 않을 정도의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함”, “법 과목 필수, 형사법포함, 임용 후에도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입직 후 교육받기엔 문제가 있음”, “법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공채시험 합격 후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현행 시험과목에 대한 개편방향 및 순경공채시험 전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들이 있었다.

첫째, 법 과목을 필수과목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기본 법 과목이 우선되어야 한다.”, “형소법은 필수로 하고, 영어점수는 토익 등으로 대체”, “법과목과 한국사를 필수로 채택”,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불필요, 공평하게 법 과목으로 정해야 함”, “타 공무원과 다른 법 과목을 유지해야 함”, “공통과목 선택제 폐지, 법 과목

위주 공통시험 필요”, “형법, 형소법,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필요”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둘째, 법 과목보다는 인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양 인성분야 반영된 시험”, “법 과목보다는 인성, 덕성을 볼 수 있는 과목 채택”, “경찰이라는 직업특성상 인성평가가 중요하다.”, “시험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검사가 중요하다.”,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는 다양하고 전반적인 시험과목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은 선발 뒤 교육을 통해 보강할 수 있도록 요구, 교양윤리, 역사의식 등 시험 추가 요구됨” 등의 응답이 이를 나타낸다.

셋째, “국어, 국사, 영어 과목을 필수과목화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찰업무에 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민법부분도 일부분 다루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영어과목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공무원에 입문하는데 있어 영어 시험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외국인도 모르는 영문은 자체 해주었으면 한다.”, “영어, 국사 공통과목을 잘하지 못하면 경찰이 되기 힘든 문제, 국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것이 경찰이 되는 것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영어는 토익 등 인증시험으로 대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봉사활동, 아르바이트(학창시절) 등 다양하게 직업체험 점수 반영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봄”과 같이 경찰직에 입문하기 전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도 있었다.

여섯째, 체력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력 반영상향 필요”, “업무에서 맞는 체질, 체력, 인성 중요”, “체격과 체력 반영비율 높여야 한다고 판단됨, 특히 여경의 경우 일선지구대에서 보호대상

이 되는 있는 실정으로 많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등의 의견이 그러하다.

일곱째, “SPO특채 경우 법 과목 내지 공부기간 또한 짧고 적응력 등이 매우 부족해 보이며, SPO 특채자에 대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 “SPO특채 전문성 결여”와 같이 학교전담경찰(SPO)특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여덟째, “시험위주 서열보다 절대평가 수준 전국통합 실시”, “시·도간 편차 심함”과 같이 현행 지방경찰청별 채용보다는 경찰청에서 통합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시사점

설문분석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2항에서는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시험의 방법) 제1항에서는 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을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필기시험의 과목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부문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순경공채시험의 과목구성은

교양부문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 상으로는 위 규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경찰학개론을 선택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양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어와 함께 모두 교양과목만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6년 9월 2일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개편 첫 해의 비법과목 선택 합격생 비율은 6% 대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6년에는 1.5%로 하락하였다. 이는 법 과목을 접하지 못하였던 고졸자들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제도개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2014년 이후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들 중 고졸자의 비율에 관하여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자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는바,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들 중에는 대졸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므로²⁹⁾ 비법과목을 택하여 합격한 고졸자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29) 최근 인사혁신처도 2013년부터 도입된 행정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을 도입하여 선택케 한 취지는 고졸자의 9급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고졸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고교과목을 대졸자들이 수험전략으로 선택해 합격하고 있는 부작용이 생겨 정작 9급 최종합격자의 고졸 이하 비율은 2013년 2%에서 2014년 1.5%, 2015년 1.4%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하였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2517332577920&outlink=1> (2016. 9. 30. 검색).

셋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입직한 합격자들은 시험이 효용성을 갖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타당성 즉 예측타당도 검증이라는 측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직무수행능력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며, 경찰업무수행의 효율성·전문성 저하, 조직의 화합 저해,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직의 특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졸자의 공직채용 확대'라는 목적을 과목개편만으로 달성하고자 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⁰⁾

2. 개선방안

본 연구자는 분석결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직무능력 및 시험과목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관점과 개편하는 관점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채용제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30) 최근 인사혁신처도 2013년부터 도입된 행정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이 직류별 직무관련성과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업무적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세무직 9급 합격자의 75%가 세법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고교과목인 사회·과학·수학을 선택해 시험에 합격하며 그렇게 채용된 신입 공무원은 실무를 몰라 단순히 수 개월간의 교육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2018년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을 1과목 이상 의무로 넣도록 하는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국어, 한국사,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하면서 2과목의 선택과목 중 일반행정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교육행정직은 교육학개론과 행정법총론,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1과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2517332577920&outlink=1> (2016. 09. 30. 검색).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채용제도는 고졸자의 채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현행 시험과목제도를 유지한다면 합격생(비법과목으로 응시하여)들에게 합격 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충분한 교육 후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개편된 시험과목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합격 후 신입교육과정 및 임용 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형사법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의하면 순경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임용 전에 모두 신입경찰관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임용되고 있는바,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들과 법 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들이 모두 동일한 기간과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과목개편 외에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들에 대해 임용 전의 교육기관에서 이들이 법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과 별도의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자의 채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현행 시험과목제도의 그 효용성이 미미하므로, 그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지역인재추천제 등 별도의 입직경로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채용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달리 현행 시험과목제도 개편하는 방향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법과목을 필수과목화 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경찰직 입직 후 법 과목을 교육으로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일선 현장에서의 범집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공무원에 입문하는 데 있어 영어시험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영어를 못하는 것은 경찰이 되는 것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영어 과목은 토익 등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특성상 인성평가 및 체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단답형·완성형문제 또는 논술시험을 새로이 도입하여 지원자의 표현력과 논리력 등을 평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적성 혹은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현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과목의 변경은 당초의 도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경 공채시험에서도 역시 지난 3년간의 시행결과 의도한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시험과목개편만으로 고졸자의 공직임용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자는 경찰청에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들의 학력이나 이들의 이직률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법정 비공개사유 내지는 자료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받지 못하였다.

향후 경찰청에서는 비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 후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이직률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법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자들과의 비교평가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시험과목이나 교육과정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논문 접수 : 2016. 11. 7, 심사 개시 : 2016. 11. 17, 게재 확정 : 2016. 12. 20〉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강성철 · 김관석 · 이종수 · 진재구 · 최근열,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4.

경찰청, 2015 경찰백서, 경찰청, 2015.

박연호, 인사행정신론(제6판), 법문사, 2001.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4.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

_____, 한국의 행정, 법문사, 2011.

위계집, 공공행정의 이해, 고시연구사, 2004.

이황우 · 김진혁 · 임창호, 새인사행정론, 법문사, 2014.

_____,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7.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8.

2. 논문

곽영길 · 김윤영,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김승태, “공무원채용시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6권 제2호,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 박종승,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 서원석,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 연구: 공무원 시험을 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13.
- 석청호, “경찰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0.
- 양현모 · 황성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부처별 자율채용제도 도입의 검토”, KIPA 연구보고(2009-12), 한국행정연구원, 2009.
- 오규철,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1호(통권 4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 이영남, “바람직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2007.
- 이황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호, 한국경찰학회, 2003.
- 임창호,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4호, 한국경찰학회, 2002.
- 최응렬 · 김순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을 위한 평가도구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경찰학회보 제13호, 한국경찰학회, 2007.

II. 외국 문헌

Donald Klinger & J. Nalbandia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1993.

Hughes, T. *Police Officers and Civil Liability: The Ties That Bind?*.

-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4(2), 2001.
- John S. Dempsey, *An Introduction to Policing*, 2nd ed.(Belmont, CA: An International Thompson Publishing Company, 1999.
- Kenney, D. & Watson, S., Intelligence and the Selection of Police Recruits. *American Journal of Police*, 9(4), 1990.
- Larry K. Gaines, John L. Worrall, Mittie D. Southerland, and John E. Angell, *Police Administration*, 2nd ed.(New York, NY: McGraw-Hill Companies, 2003.
- Leonard, V.A. & Harry W. More, *Polic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8th ed.(Mineola,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1993.
- Moustafa, K.S. & Miller, T. R. "Too Intelligent for the job? the Validity of Upper-Limit Cognitive Ability Test Scores in Selection,"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68, 2003.
- Stahl, O. Glen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7th and 8th ed.). New York: Harper & Row, 1976, 1983.

Ⅲ. 기타 자료

<http://www.law.go.kr>(016. 8. 2.검색)

<http://www.moleg.go.kr>, 법제처 법령검색(2016. 8. 2. 검색)

「경찰공무원법」[시행 2015.3.31.] [법률 제12912호, 2014.12.30.,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 2016.4.19.] [대통령령 제27098호, 2016.4.19.,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2015.10.30.] [행정자치부령 제41호,
2015.10.30., 개정].

< ABSTRACT >

The Re-Discussion for the Present Employment System of Police Officers

– On the System of the Examination of Police Officers –

Kwak, Young-Gil

The national policy agency revised Police Appointment Regulations in order to enlarge the opportunity for highschool graduate to be appointed in 28.12.2012 and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police examination introduced highschool subjects including 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y, science and enforced the revised regulations in 2014.

Questions are posed for the performance ability of the police officers who serve in the field service and they are being educated in the institute for police officers education. And this survey are taken for the purpose of intended aims being performed as of 2016.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are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e questions.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are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e questions.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police examination subjects are appointed as selective subjects excluding Korean history and English, so students can take an examination with only liberal arts. We don't know whether the students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law and the applied ability which is needed in servic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police examination subjects are appointed as selective subjects excluding Korean history and English, so students can take an examination with only liberal arts. We don't know whether the students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law and the applied ability which is needed in servic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Second, according to the data opened in The national policy agency in 2.9.2016, the rate of successful applicants who selected non-law subjects is 6% but the rate dropped to the point 1.6% in 2016. This shows that the purpose of the revised system is not successful, which was introduced to enlarge the opportunities for the highschool graduate who have not experienced in law subjects.

As a result, the present the system of police examination shows the intended effects are insignificant, so various systematic supplementation should be set for the revision of subjects or for the effective operation.

The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revise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sition of subjects and assurance of validity of examination usefulness. Also before being police officers being appointed they should have enough education in police education institute and after being appointed they should be educated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speciality in police performance.

◆ Key Words : System of Employment, Police Officer, Employment of Police Officers, Examination Subjects, Police Officers' Examination